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9306

발의연월일: 2023. 1. 3.

발 의 자: 송언석·강대식·구자근

김미애 · 김상훈 · 김희곤

유경준 • 윤창현 • 이종성

전봉민 · 정희용 · 조은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가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되는 경우 중 상당수가 현재 모습과 다소 차이가 있는 과거의 사진으로 공개되어 피의자 식별이 매우 어 려우며, 이로 인해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음.

이에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 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확한 피의자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후단 신 설).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얼굴 공개를 하는 경우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	②
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	
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단	<u>얼굴 공</u>
신설>	개를 하는 경우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
	습으로 한다.